

의안번호	2206150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5.03.18.
추 계 번호	25C5525

환자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환자의 날을 지정하고 환자정책기본계획, 실태조사, 환자정책위원회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1,700만원, 2030년 1억 2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5억 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환자의 날(안 제4조)	115	117	119	122	124	596	119
환자정책기본계획 (안 제7조)	300	-	-	-	-	300	60
실태조사(안 제11조)	300	-	-	300	-	600	120
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 (안 제14조)	2	2	2	2	2	10	2
합계	717	119	121	424	126	1,506	301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환자의 날)	○ 국가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날을 정함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 (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)와 협의하여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○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3	안 제11조 (실태조사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,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2조 (환자정책영향평가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“환자정책영향평가”)하고, 그 결과를 환자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 ○ 환자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5	안 제13조 (환자정책연구사업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(이하 “환자정책연구사업”)을 수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	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자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14조 (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)	○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·조정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	의무규정
7	안 제15조 (위원회의 구성 등)	○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1항) ○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, 그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8	안 제20조 (환자단체의 보호·육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단체를 보호·육성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·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9	안 제21조 (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(제1항) ○ 환자통합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함(제2항) ○ 제1항에 따른 환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10	안 제25조 (비용의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26조 (위임·위탁)	○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자정책 관련 전문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2	안 제27조 (포상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문제 해결이나 정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환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함(제2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환자의 날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2	안 제8조 (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	
3	안 제11조 (실태조사)		
4	안 제12조 (환자정책영향평가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정책연구사업의 방법, 규모, 위탁 여부 및 경비 지원 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추계를 위한 구체적인 가정이 어려움
5	안 제13조 (환자정책연구사업)		

6	안 제14조 (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7	안 제20조 (환자단체의보호·육성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8	안 제21조 (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)	×	○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법인으로 환자통 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나, 관련 기관, 업무 규모 등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 적인 조직 규모 및 소요 예산 등을 추정하는데에 한 계가 있음 - 참고로,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중독관리통 합지원센터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 등은 각각 60개소, 4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
9	안 제25조 (비용의 지원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0	안 제26조 (위임·위탁)		
11	안 제27조 (포상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, 향후 정책 변화에 따
라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¹⁾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
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환자의 날(안 제4조)을 정하고 환자정책 기본계획(안 제
8조), 실태조사(안 제11조) 수립 및 환자정책위원회(안 제14조)를 수행
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합을 추계함

1) 참고로, 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는 현행법 제15조제1호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
력지원전문기관(국민건강보험공단)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조
사·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현시점에 위원회 개최 빈도를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. 보건복
지부는 2023년에 ‘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(안)’ 마련 연구를 위해 2억 7,000만원을 배정함

□ 환자의 날(안 제4조)

-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‘장애인의 날’과 ‘사회복지의 날’의 사업비를 준용하여 환자의 날 기념식 진행과 홍보 및 위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보건복지부는 ‘장애인의 날’과 ‘사회복지의 날’의 행사 진행을 위해 위탁기관 지원금을 포함하여 2024년 기준 각각 1억 7,200만원, 5,300만원을 배정함

[표 2]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기념일 주요 행사 개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장애인의 날	사회복지의 날
법적근거		「장애인복지법」 제14조 (장애인의 날)	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2 (사회복지의 날)
기념행사	소관부처 실시	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	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시상, 행사 및 홍보
	위탁기관명	한국장애인개발원	사회복지협의회
	실시항목	기념식 진행, 훈장·포상 시상	기념식 진행
행사비용	소관부처 예산	52	29
	위탁기관 지원	120	24
	합계	172	53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유사사례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‘환자의 날’ 지정과 행사 및 홍보에 1억 1,000만원(2024년 기준)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
□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7조·제11조)

- 제정안에 따른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유사사례인 「환자안전법」에 따른 각 사업 비용을 준용함²⁾
 - － 보건복지부는 「환자안전법」 제7조·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 - －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(2018~2022) 수립을 위한 2016년 연구용역비 3억원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3억원(2025년 기준)을 준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비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2) 제정안에 따른 ‘환자정책’은 환자의 건강보호,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한 정책으로 현행 「보건의료발전법」과 「환자안전법」에 따른 종합계획, 실태조사, 연구용역 등과 중복되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6억원을 소요하고, 2029년에 2차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가정

□ 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(안 제14조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하며, 그 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안 제15조제7항은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하였으나, 제정안에 따른 환자정책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무국 설치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 인력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³⁾
-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
 - (위원 정수)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10명으로 가정
 - (회의 횟수)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준용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(참석 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⁴⁾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 200만원으로 추계됨

3)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위원회의 사무기구 등)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(常勤)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. 다만,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,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환자의 날(안 제4조)	115	117	119	122	124	596	119
환자정책기본계획 (안 제7조)	300	-	-	-	-	300	60
실태조사(안 제11조)	300	-	-	300	-	600	120
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 (안 제14조)	2	2	2	2	2	10	2
합계	717	119	121	424	126	1,506	3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